

정부 부처별 재해예방대책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은 지난 2월 13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관리실태 평가와 정책개선방향」을 보고 했으며 건설교통부 등은 「96재난관리계획」을 부처별로 마련하여 보고했다. 본고는 부처별 96재난관리계획중 건설관련 부문을 간추린 내용이다.

안전관리자에 작업중지권 부여

■ 건설교통부

[1]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① 특별관리 대상시설물 지정
건설교통부 소관 전체시설물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 위험시설물(D, E급)은 특별법 관리대상에 추가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시설물별 관리책임자, 감독자 선임 등 책임관리제도를 실시한다.

②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안전 및 유지관리 조직·인원·장비·예산을 확보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한다. 금년에는 공공 338개, 민간 898개 등 총 1,

236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③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연면적 5천㎡ 이상 중·소규모의 다중이용시설을 특별법상 안전관리대상에 추가(특별법시행령 개정)하여 철도 역사·자동차 여객터미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등을 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한다.

[2]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산하지방청 및 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연1회 이상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며 10층 이상 일반건축물, 다중이

용건축물, 학교시설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건축공사를 점검하는 등 수시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사소한 부실에 대해서도 부실벌점을 부과하여 입찰을 제한하거나 PQ심사시 반영한다.

[3] 안전관련 세부기준 제·개정 및 정비

①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편성기준 마련

적정한 안전진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 진단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을 고시하고 유지관리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한다. 즉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비용을 산정하고 유지관

리조직(인원 및 장비)의 적정 규모와 비용을 산정하며 보수·보강·대체 등 유지관리비용 투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한편 시설물 보수·보강방법의 표준화에 의한 개략공사비를 산정한다.

② 시설물별 세부점검요령 작성

이미 고시되어 시행중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각 시설물별 세부실시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교량·터널·건축물·댐·하천 등 11개 시설물의 현장점검요령 및 표준점검 양식을 마련한다.

[4] 안전진단 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특별법상 97년부터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5] 시설물 안전관리정보체계 구축

시설안전기술공단이 특별법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계도를 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한다. 이를 위하여 시설물 설계도서관리지침을 마련한다.

시설물별로 관리대상을 표준화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실시 내용과 개·보수내역을 이력화하여 유지관리에 활용한다.

■ 내무부

[1] 재난위험시설·지역 지정

교량(지방도), 지하철,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대형공사장, 건축물 등 자치단체 소관시설로서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형사고 가능성이 있는 시설·지역을 지정한다.

재난위험시설·지역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설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2] 재해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 강구

교량 1570, 건축물 436, 지하도 34 등 총 2356개소를 대상으로 지역별·시설별로 불안전 정도에 따라 조치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교량과 지하도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비, 안전진단장비구입비, 보수·보강비, 철거비 등 예산을 최우선 확보하여 조속히 진단 및 정비한다.

지방예산 절대부족분은 정부차원의 지원을 검토한다. 민간소유 불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강제 퇴거명령 등 의법조치와 보수·보강유도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사회복지시설과 영세민주택 등에 대한 안전점검 서비스를 도입한다.

■ 노동부

[1] 취약분야 집중관리·점검

① 유해·위험사업장 전산관리

대형건설현장과 화학공장 등 주요위험시설물의 유해·위험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한다. 각종 지도점검내용과 개선조치결과도 입력한다. 입력된 안전관련자료는 하이텔 등 통신망과 연결하여 재해예방관련단체 등의 재해예방업무에 활용한다.

② 안전관리실명제 실시

건설현장 1천개소(지하철·고속전철 2백개, 아파트 등 8백개), 제조업 3백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명제를 실시한다. 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공단 전문가 및 기업의 안전관계자로 책임관리사업장을 지정하고 점검실시부터 사후관리까지 점검자의 이름과 점검내용을 사업장에 게시하고 점검기관에도 비치한다. 건설현장은 해빙기·장마철·동절기 등 취약시기별로 집중 점검한다. 대형건설업체 순으로 재해율을 상반기에 조사하여 입찰참가사전심사시 가감점, 지도감독면제 등 혜택을 부여한다.

[2] 근원적 재해예방지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정 : 교량, 댐, 지하철 등 중대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공사현장 등 2500여개소에 대해 공사진척에 따른 위험요인의 안전관리계획, 기계·기구의 적정배치 및 방호조치 여부 등을 심사하며 이 계획서의 이행여부를 매분기 1회 확인 점검한다.